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징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과 그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붙임 : 징계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부.

2011. 7. 15

주식회사 케이티
회장을 대리하여

인재경영실장

김 상 효

KT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무처장

윤 오 원

[붙임]

징계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 징계제도 개선

가. 징계 처분의 종류에 '정직'을 추가하여 회사 징계를 '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나. 정직 처분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다. 감봉 처분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한다.

라. 징계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유지하며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징계와 관련한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다.

2. '정직'기간중의 근로조건

가. 징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자의 보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준연봉은 월정액의 1/3을 지급한다.

○ 성과급(전사, 부문, 팀)과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정직 처분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은 회사 보수규정 제34조(평균임금 산정특례) 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 정직 처분기간은 연차휴가 대상일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출근률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한다.

3. 효력에 관한 사항

가. 본 합의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관련 단체협약 및 회사의 제규정을 본 합의내용으로 대체하여 효력을 인정한다.

나. 차기 단체협약 개정 시 본 합의내용을 단체협약에 반영한다.